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73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341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첫 번째 표 아래 4행의 "폐업되었으며,"를 "폐업되고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4~5행의 "갑 제12, 16, 1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18, 22, 24, 26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9쪽 3행의 "없다."부터 10쪽 8행의 "아니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원고의 과점주주인 I은 1998년경부터 의류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를 2012. 9. 28. 설립하였는데, 그 무렵 J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K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16. 기준 K의 발행주식 중 90%를 보유하여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항은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위 시행령 규정은 판단 기준의 하나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구체적인 세분류에 따라서만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까지는 해석할 수 없는 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K는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외주가공업체를 통하여 의류를 제작하여 매장 상호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던 점, △ K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8호증)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상품을 매입한 후 일정 마진을 붙여 되파는 상품매출은 전혀 없이 제조업의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인 제품매출만이 매출액란에 기재되어 있고, 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나 사업자등록증(갑 제18호증)에도 목적사업 또는 업태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에는 의류도매업(업종코드 513121)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무렵에는 의류제조업(업종코드 181201)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공장을 임차한 시기는 2013. 10. 8.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2. 9. 28.경 설립될 당시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제조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의류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K와 연속성이 없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K의 목적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업은 '의류 도·소매업, 제조업 등'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인 '의류·잡화 제조업,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과 비교하여 그 사업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설립된 2012. 9. 28. 이후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K의 직원 중 대부분이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된 다음해인 2013년 K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은 위 직원들이 원고에 입사할 무렵 K를 사실상 폐업하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I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J는 2013. 2. 21. 폐업하였는데, 이 역시 I이 장차 원고의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기 위하여 기존에 매출이 부진하였던 사업체를 정리한 결과로 보인다).

⑤ 원고의 매출액은 K의 매출액이 급감한 2013년 급격히 상승하여 그 규모가 K의 2012년 매출액의 약 4.58배(= 원고의 2013년 매출액 12,548,705,548원 / K의 2012년 매출액 2,739,416,491원)에 이른다. 그러나 △ 원고의 2013년도 매출처 중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등은 K가 2012년도에 거래한 업체로서 거래처의 상당 부분이 원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2013년도 매출처 중 AU, AV, 주식회사 AW 등은 J가 2012년도에 거래한 업체이기도 하다), △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설립 이후의 사업 운영 현황을 참작하더라도 그 문언상 '회사가 설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확장되거나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나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정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달리 취하고 있지는 않은 점, △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 신장은 K 등과의 기존 거래처 중복 외에 원고가 브랜드 매장을 대형쇼핑몰 등에 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의 대표자인 I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제10호증)에 의하면, "I은 2007년 'M'을 론칭하여 현재 원고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원고는 'M'에 이어 'AY', 'J', 'AZ', 'BA'를 론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 위 'M'의 론칭 시기는 원고의 설립시기인 2012. 9. 28. 이전으로서 K의 설립시기(2007. 3. 20.)와 일치하는 점, △ 원고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원고의 연혁에는 2012. 10. K에서 원고로 사명을 변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의 최초 상호는 'B'로 K와 유사하다), △ 원고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K의 것과 동일한 점, △ I은 2001년부터 단순히 청바지를 판매하는 것에 나아가 SPA[1]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원고를 설립한 다음 고유 브랜드인 'BA'를 론칭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K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업력을 바탕으로 K가 취급하고 있었던 청바지 외에 고유 상표로 등록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방향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새로이 설립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K와 연속성·독립성이 없고, 인적·물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이 설립된

1) 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패션업체가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물류와 고객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적기·적재 생산을 지향하여 재고를 줄이고,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제품 공급 시간과 제품가격을 절감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도 소규모 대리점에 맡기지 않고 대형매장을 통해 박리다매하는 형식을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법인으로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317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차량의 수입업체가 국내 브랜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개의 차종의 판매권을 동일업체에 부여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각 귀속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차종에 대한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차종을 추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별도로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였던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11쪽 4행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는 데다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지방세법령 조항은 그 문언상 설립된 법인이 기존법인과 사실상 동일체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충족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K와 원고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업체로 취급된 K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중과세 취득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30

[표]

(단위 : 원)

순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가산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1	628,055,360	94,038,270	15,786,400	90,583,960	8,886,610	1,491,810	838,842,410
2	563,220	54,110	29,260	88,250	3,060	1,650	739,550
합계	628,618,580	94,092,380	15,815,660	90,672,210	8,889,670	1,493,460	839,581,960

끝.